#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636 제출연월일: 2024. 12. 18.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 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 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6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 도보존육성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30명"을 "41명"으로, "호선(互選)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호 중 "형"을 "실형"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 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역사 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 제6조(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 <u>육성위원회)</u> ①     |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           |                     |
| 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          |                     |
|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                     |
| 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        |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u>육성위원회</u>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6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
|                           |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 <u>&lt;신 설&gt;</u>        | 6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 |
|                           | 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    |
|                           | 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또는 같     |
|                           | 은 조 제4호에 따른 주민지원    |
|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         | ②                   |
| 원장 2명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 <u>41명</u>          |
|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
| 호선(互選)한다.                 | 국가유산청장이 된다.         |
| ③ • 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
|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    |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생략)
-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 다.
  - 1. (생 략)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
  - 3. 4. (생략)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 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 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 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 다.

- (b) (현행과 같음)
- ⑦ -----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 1. (현행과 같음)
- 2. ----- 실형-----

3. · 4. (현행과 같음)